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903호 2023. 3. 15.(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3-36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2
거창군 고시 제2023-37호	도로명주소 고시	4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3-483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공고 제2023-484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2
거창군 공고 제2023-485호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
거창군 공고 제2023-486호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9

회 람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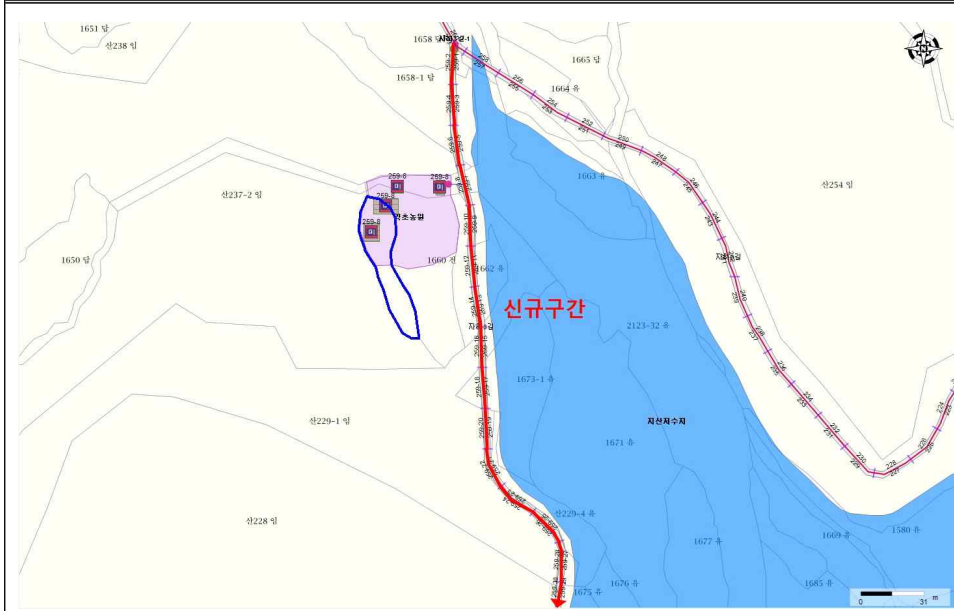
거창군수

1. 고시일자 : 2023. 3. 15.
2. 고시방법 : 거창군보,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4. 참고사항
 - 도로구간의 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 2023년 3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055-940-3314)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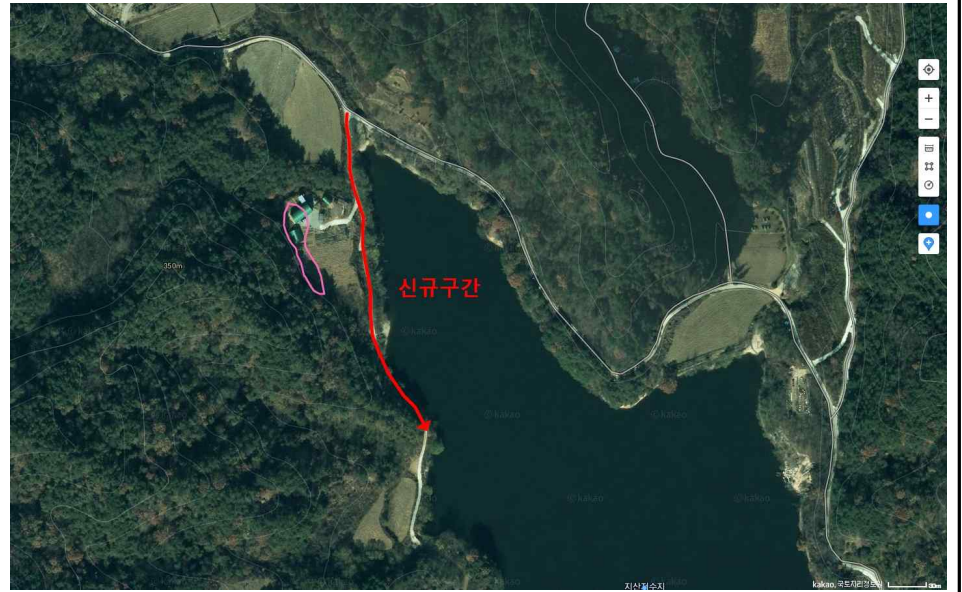
도로구간 변경 조서

일련 번호	행정 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앙선	건물 번호	사물 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1	남하면	변경 전	자하3길	남하면 지산리 1658 (자하3길 259)	-	도면참조	1	없음	종속구간 생성	직권
		변경 후	자하3길	남하면 지산리 1658 (자하3길 259-1)	남하면 지산리 산228 (자하3길 259-30)	도면참조				

주소정보기본도



위성사진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15.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승강기길 133 등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4)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3- 483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2. 1. 13.시행)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신규업무 추가 및 기준인력 증원(정책지원관) 반영 등 조직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정원의 총수 증원 3명: 793명→796명(안 제25조)
 - 1)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증 3명(17명→20명)
 -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4)
 - 1)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증 3명
 - 가) 현행: 793명(본청360, 의회17, 직속기관149, 사업소41, 읍42, 면184)
 - 나) 변경: **796명**(본청360, **의회20**, 직속기관149, 사업소41, 읍42, 면184)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7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eros338@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2.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793명”을 “79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7명”을 “20명”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고 한다)의 총수는 793명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 정원: 776명 2. 의회사무기구 정원: 17명</p>	<p>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고 한다)의 총수는 796명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 정원: 776명 2. 의회사무기구 정원: 20명</p>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796 793	360	20 17	149	76	73	41	42	184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759 756	354	20 17	119	46	73	40	42	184
	4급	5	4		1		1			
	5급	39	15	3	6	4	2	3	1	11
	6급 이하	715 712	335	17 14	112	42	70	37	41	173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7	3		3	3		1		
지도직 (지도사)		28	1		27	27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2. 1. 13.시행)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신규업무 추가 및 기준인력 증원(정책지원관) 반영 등 조직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1) 일반직7급: 증3명
 - 가) 의회사무과(증3명): 행정3
4. 의견제출
 -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7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eros338@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2.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규 칙 명: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8조 관련)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

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

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93명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 정원: 776명
2. 의회사무기구 정원: 17명

제27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2. 1. 13.시행)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신규업무 추가 및 기준인력 증원(정책지원관) 반영 등 조직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조항 정비(안 제1조)
 -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제6조 규정 삭제에 따른 내용 정비
 - 나. [별표 2] 신설에 따른 [별표] 수정(안 제3조제1항)
 - 다. 세부 사무분장 내용 신설(안 제4조)
 - [별표 2]에 담당신설에 따른 세부 사무분장 내용 기재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7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eros338@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2.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규 칙 명: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의회 규칙 제 호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사무분장) 사무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이하 “<u>조례</u>”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u>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에 따라 <u>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u>[별표]</u>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p>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u>별표 1과</u> 같다. ②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u>제4조 (사무분장) 사무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u></p>

[별표 2]

세부분장사무(제4조 관련)

구 분	세 부분 장 사 무
<p>의정담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기록물·보안·관인·공인 관리 3. 의원 및 사무과 직원의 복리후생·각종수당관리에 관한 사항 4. 의원 간담회 및 연수·연찬회 관련 사항 5. 의전에 관한 사항 6.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7. 의원 국제친선연맹 교류 및 연수에 관한 사항 8. 직원의 인사·조직·성과상여금·성과연봉·교육훈련·복무에 관한 사항 9.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10. 의회자매결연 업무에 관한 사항 11.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12. 의회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3. 물품 및 차량유지·관리 14.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조정 15. 의정 활동 사진 촬영 및 관리 16. 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17. 방송 및 음향시설 관리 18. 과내 서무업무 및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구 분	세 부분장 사무
의사담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간 회기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 지원 3.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4. 의안의 접수·회부·이송 등 처리 및 의결 문서 보존관리 5.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6. 전·후반기 의장단 구성 총괄 7.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회의록 작성·발간·배부·보존 및 검색시스템 운영 관리 9. 본회의, 위원회 등 회의진행 사항의 녹음 및 속기 10. 의정 보고서 및 의정 백서 발간 11. 의회 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2. 의회 소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총괄 관리 13. 조례 등의 제정·개정과 관련한 법제 지원 14. 자치입법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15.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연구 및 의회 관련 정책 개발 16. 청원·진정 민원의 접수·분류 및 처리결과 통지 17. 주민조례발안 업무에 관한 사항 18. 의원 등록관리 19. 위원회 위원 선정(추천)관리 20. 의정 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21. 정책지원관 업무수행의 지휘 및 감독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기구설치기준) ①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별표 4와 같다.<개정 2021. 12. 16.>

② 시·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별표 5와 같다.<개정 2011. 8. 22.>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시·도와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신설 2021. 12. 16.>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 1)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
- 2) 변경: 2028년 12월 31일까지

나. 세입·세출 등 특별회계 규정 입안원칙에 맞게 정비(전 조문)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복지정책과)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 1) 주소 : (우 510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 2) 전화 055-940-3132, 팩스 055-940-3089, 이메일: speak80@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담당(☎055-940-3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서식) 1부.

2.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세입) 거창군수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여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용도로 한다.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수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이하 “기금담당관”이라 한다)은 「의료급여법」 제21조와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u></p> <p><u>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u></p>	<p><u>제2조(설치와 세입) 거창군수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여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u></p>
<p><u>제3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급여비용, 부당이득금, 구상금, 그 밖에 의료급여업무에 쓰이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하고 영 제16조에 따른 기금출납원(이하 “기금출납원”이라 한다)에게는 기금부담액을 지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u></p> <p><u>② 기금출납원은 제1항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거창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u></p>	<p><u>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용도로 한다.</u></p>
<p><u>제4조(관리·운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u></p>	<p><u>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u></p>
<p><u>제5조(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p><u>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의료급여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4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타법개정]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총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금을 교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전액을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료급여비용심사위탁수수료, 수급권자전산관리위탁수수료, 급여비용지급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 위탁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의료급여기금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⑦법 제2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7. 3. 27., 2008. 3. 3., 2010. 3. 19., 2012. 11. 21.>

1.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수당, 일용잡급, 국내여비, 교육비, 수용비, 수수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구입비(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이 경우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기금지출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⑧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금계정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⑨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1. 12. 31.>